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**2149**

제출연월일 : 2020. 11. .

제 출 자:하 남 시 장

1. 제안이유

○ 대규모 국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기구 신설을 통한 조직 정비 및 인력 보강으로 행정 효율성제고 및 대민 행정 서비스 질 향상

2. 주요내용

- 가. 일자리경제국에 일자리경제과, 기업지원과, 세정과, 세원관리과를 둠 (안 제6조)
- 나. 교통건설국에 교통정책과, 건설과, 도로관리과, 차량등록과를 둠(안 제9조)
- 다. 녹색환경국에 환경정책과, 공원녹지과, 도시농업과, 식품위생과를 둠 (안 제9조의2)
- 라. 미래도시사업단에 도시전략과, 도시재생과를 둠(안 제11조)
- 마. 정원의 총수는 926명을 1,019명으로,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5급 55명을 59명으로, 6급 이하 855명을 942명으로 조정(안 별표 5)
-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- 4. 신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- 5.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
6. 예산수반 사항 : 덧붙임

○ 소요경비 : 세부내역 비용추계서 참고

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0년 11월 11일 ~ 11월 15일(5일)

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 평가 : 의견없음

9. 참고사항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

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4조 중 "교통환경건설국, 자치행정국, 명품도시사업단"을 "교통건설국, 녹색환경국, 자치행정국, 미래도시사업단"으로 한다.
-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혁신기획관"을 각각 "**정책** 기획관"으로 한다.
- 제6조제1항 중 "세원관리과, 도시농업과"를 "세원관리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(종전의 제6호) 중 "관리 및 녹색성장 업무"를 "과리"로 하며,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.
- 제9조의 제목 "(교통환경건설국)"을 "(교통건설국)"으로 하고, 같은 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- ① 교통건설국에 교통정책과, 건설과, 도로관리과, 차량등록과를 둔다.
-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교통환경건설국장"을 "교통건설국 장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환경의 보존 및 관리"를 "도로건 설 및 하천관리"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.
 - 3. 도로점용 및 도로보수 등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녹색환경국) ① 녹색환경국에 환경정책과, 공원녹지과, 도시농업

- 과, 식품위생과를 둔다.
- ② 녹색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- 1. 환경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2. 도시공원·산림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
- 3. 농업 및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4. 식품·공중위생 관리 및 위생지도에 관한 사항
- 제11조의 제목 "(명품도시사업단)"을 "(미래도시사업단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명품도시사업단"을 "미래도시사업단"으로, "도시개발과, 공원녹지과"를 "도시전략과, 도시재생과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명품도시사업단"을 "미래도시사업단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1호 중 "도시공원·산림공원 관리"를 "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"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12. 지역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
- 제12조제1항 중 "같은 법 시행령 제8조"를 "제1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"로, 같은 항 및 제2항 중 "보건소"를 각각 "보건소 및 보건지소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건강증진과, 미사보건센터"를 "건강증진과"로 한다.
-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- 제13조(소장 등)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며, 보건 소장은 시장의,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도·감독한다.
-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926명"를 "1,019명"로 하고, 같은 조 제1 호 중 "909명"을 "1,002명"으로 한다.
- 별표 2,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한시기구인 미래도시사업단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"교통환경건설 국"을 인용한 경우에는 "교통건설국"을, "명품도시사업단"을 인용한 경우에는 "미래도시사업단"을, "혁신기획관"을 인용한 경우에는 "정책 기획관"을, "도시개발과"를 인용한 경우에는 "도시전략과"를 각각 인 용한 것으로 본다.

	부서명	혁신기획관		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혁신기획관 이정훈		
	팀장 직위·성명	조직성과팀장 정주연		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이소현 (790-5543)		

신·구조문대비표

연 행	개 성 안
제4조(국·단의 설치)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일자리경제국, 복지교	제4조(국·단의 설치)
육국, 안전도시국, 교통환경건설국, 자	<u>교통건설국, 녹색환경</u>
<u>치행정국, 명품도시사업단</u> 을 둔다.	<u>국, 자치행정국, 미래도시사업단</u>
제5조(보좌기관) ① 부시장 직속으로 <u>혁</u>	제5조(보좌기관) ① <u>정</u>
<u>신기획관</u> , 청렴감사관, 도시브랜드담당	책기획관
관, 정보통신담당관을 둔다.	
② 혁신기획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	② <u>정책기획관</u>
분장한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6조(일자리경제국) ① 일자리경제국에	제6조(일자리경제국) ①
일자리경제과, 기업지원과, 세정과, <u>세</u>	세원
<u>원관리과, 도시농업과</u> 를 둔다.	<u>관리과</u>
② 일자리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	②
한다.	<u>.</u>
1. 지역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	<u><삭 제></u>
<u>2</u> . ~ <u>5</u> . (생 략)	1 . ~ 4 . (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
	같음)
<u>6</u> . 에너지(석유, 가스, 태양열 등) <u>관리</u>	<u> 5</u> <u>관리</u>
<u>및 녹색성장 업무</u> 에 관한 사항	
<u>7</u> . (생 략)	<u>6</u> . (현행 제7호와 같음)
8. 농업 및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	<u><삭 제></u>
관한 사항	
제9조(교통환경건설국) ① 교통환경건	제9조(교통건설국) ① 교통건설국에 교
설국에 교통정책과, 환경정책과, 건설	통정책과, 건설과, 도로관리과, 차량
과, 차량등록과, 식품위생과를 둔다.	등록과를 둔다.

- ② 교통환경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- 1. (생략)
- 2. 환경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3. 도로건설 및 도로보수,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
- 4. (생략)
- 5. 식품·공중위생 관리 및 위생지도 에 관한 사항

<신 설>

- 제11조(명품도시사업단) ① 명품도시사 제11조(미래도시사업단) ① 미래도시사 업단은 한시기구로 하며 도시개발과, 공원녹지과를 둔다.
 - ② 명품도시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분장한다.
 - 1. ~ 10. (생략)
 - 11. 도시공원·산림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

<신 설>

② 교통건설국장-----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도로건설 및 하천관리-----
- 3. 도로젂용 및 도로보수 등 도로관리 에 관한 사항
- 4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- 제9조의2(녹색환경국) ① 녹색환경국에 환경정책과, 공원녹지과, 도시농업과, 식품위생과를 둔다.
 - ② 녹색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.
 - 1. 환경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- 2. 도시공원·산림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
 - 3. 농업 및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- 4. 식품・공중위생 관리 및 위생지도 에 관한 사항
- 업단----- 도시전략과, 도시재생과----.
 - ② 미래도시사업단-----

- 1. ~ 10. (현행과 같음)
- 11.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-----

12. 지역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

-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<u>보건소</u>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.
 - ③ 보건소에는 보건정책과, <u>건강증진</u> 과, 미사보건센터를 둔다.
 - 제13조(소장) 보건소장은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 한다.
- 제21조(정원의 총수) 하남시에 두는 정원 의 총수는 <u>926명</u>이며, 다음 각 호와 같 이 구분한다.
 - 1. 집행기관의 정원 : 909명
 - 2. (생략)

MIZT(EM) (T
제13조,
<u>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</u>
보건소 및 보건지
<u> 소</u>
② <u>보건소 및 보건</u>
<u>지소</u>
③ 건강증진과
-
제13조(소장 등)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
<u>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며, 보건소</u>
장은 시장의,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
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
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도・감독한다.
제21조(정원의 총수)
<u>1,019명</u>
1 <u>1,002명</u>
2. (현행과 같음)

[별표 2]

보건소·보건지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(제12조제2항 관련)

명 칭	관 할 구 역		
하남시보건소	하 남 시 전 지역		
미사보건센터	풍산동, 미사1동, 미사2동		

[별표 5] **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**(제23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	총계	본청	의회 사무과	직속 기관	사업소	읍·면·동	
총 계		1,019	1,019					
정무직 계		1	1					
시장		1	1					
일반직 계 1,0		1,011	1,011					
	3급	1	1					
	4급	9	7		1	1		
	5급	59	32	3	7	3	14	
	6급 이하	942	942					
별정직 계		3			3			
	5급상당	1	1					
	6급상당 이하	2	2					
연구직 계		4	4					
연구사		4	4					

비용추계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- O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
- 나. 비용 발생 요인
- O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

2. 비용 추계결과

- 가. 추계의 전제
 - 매년 임금인상률을 1.8%로 전제함
 - ※ 2021년 0.9%, 2020년 2.8%, 2019년 1.8%
 - 매년 호봉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률은 4.0%로 전제함

나. 추계결과

O 5년간 소요금액 : 17,034,104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총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지방세 추가소요 금액		17,034,104	3,033,880	3,209,845	3,396,016	3,592,985	3,801,378
추가소요 인건비 (총 93명)	보수	16,100,288	2,867,562	3,033,880	3,209,845	3,396,016	3,592,985
	임금인상(1.8%)	289,805	51,616	54,610	57,777	61,128	64,674
	호봉 상승(4.0%)	644,011	114,702	121,355	128,394	135,841	143,719

※ 2020년 일반직 8급(3호봉) 평균 보수지급액 : 30,834천원 / 1인, 초과근무수당 제외

다. 재원조달방안 : 해당없음

3.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: 해당없음

4. 작성자 : 혁신기획관 이정훈